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35호 2019. 9. 27(금)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19-100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19-1642호 보상계획공고[지리산IC 진입도로(비도시구역) 개설공사] ----- 2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9 - 100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고시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9년 9월 27일

1.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유수지	유수 시설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558번지 일원	17,480	감)410	17,070	남원시고시 제 2018-142호 (2018.11.09)	경미한 변경(5% 미만)

■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8	유수지	· 유수지 면적 변경 17,480㎡ → 17,070㎡ (감 410㎡)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지역여건반영

2.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면 : 실음생략

남원시 공고 제2019 -1642호

보 상 계 획 공 고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지리산IC 진입도로(비도시구역)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6일

남 원 시 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지리산IC 진입도로(비도시구역) 개설공사
- 나. 사 업 위 치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아영면 인풍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개설 L= 1.1km, B= 21m
- 라. 사 업 기 간 : 2019 ~ 2021년(3개년)
- 마. 사업 시행자 : 남원시장

2. 보상대상

- 가. 토지 :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아영면 인풍리 일원
(편입토지 내역 : 별도 기재)
- 나. 물건 :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9. 09. 26 ~ 2019. 10. 10.
-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 063-620-6464, 6462)
- 다. 열람 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역
-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 등에 비치 및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금 방법 및 절차

가. 보 상 시 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나. 보 상 방 법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금 지급(계좌입금)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다. 보상액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보 상 절 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남원시에 감정평가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원시청 도시과(도시정비담당)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남원시청 도시과(도시정비담당)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미수령자 등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 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 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도시과 (☎ 063-620-6464, 646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C 진입도로(비도시구역) 개설공사

◎ 위치도



◎ 현황사진

